심사보고서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 1047 2022. 6. 21.(화) 산업경제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체출일자 : 2022년 6월 3일

다. 회부일자 : 2022년 6월 3일

라. 상정일자 : 제400회 충청북도의회(임시회)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

(2022년 6월 14일 상정의결)

마. 주요내용: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선미 경제기업과장)

가. 제안이유

○ 종래에 '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'에서 통합 운영하여 온 '지역 경제협의회', '소비자정책위원회', '유통분쟁조정위원회'등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구성 운영하기로 기능을 정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를 폐지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○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폐지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(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희)

가. 주요 검토내용

- 본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방공공요금의 조정, 물가안정 시책,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, 유통ㆍ물류시책,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, 소상공인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'지역경제협의회', '소비자정책위원회', '유통분쟁조정위원회'등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여 왔으나.
-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구성·운영하기로 기능을 정비함에 따라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가 실효성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

법제처 2010. 2. 1. 회신 09-0395 해석례

-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고, 이렇게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과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(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).
- 법령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관의 경우 그 설치·운영을 지방자치단체 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고, 또 조례를 통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으므로(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), 지방자치단체 가 어떠한 자문기관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는 자문기관 에는 개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은 제외된다 고 보아야 함
- O 따라서 법령에서 자문기관의 명칭, 기능, 운영 방법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기관 간에는 그 성격과 기능이유사하다고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각각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없음

참고

경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기능별 조정 내용

기 능	조례정비 내용	근거법령		
○지역경제활성화 주요시책	< 경제기업과 > 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」 <u>제정</u> - 충북지역경제협의회 구성 ※ 30명이내 구성(위원장: 경제부지사)	「시도경제협의회규정」제9조 (지역경제협의회의)		
○소비자권익 증진 ○지역물가안정 주요시책 ○지방공공요금 조정	< 경제기업과, 사회적경제과 > 「충청북도 소비자 기본 조례」 개정 - 충북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 (소비자권익증진 + 물가, 공공요금) ※ 15명 이내 구성(위원장 : 경제부지사)	「소비자기본법 시행령」제20조 (지방소비자정책위원회)		
○유통산업간 분쟁조정	< 사회적경제과 > 「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」 제정 - 충북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※ 11~15명 구성위원장: 위원 중 호선	「유통산업발전법」제36조 (유통분쟁조정위원회)		
○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	< 사회적경제과 > 「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」 <u>개정</u> - 충북소상공인위원회 구성 ※ 9명이내구성위원장: 위원 중호선	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8조 (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등)		
○물류시책에 관한 사항	< 교통정책과 > 법령을 근거로 위원회 운영 중	「물류정책기본법」제20조 (지역물류정책위원회) ※ 구성 방법 등이 시행령에 명시		
○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	< 경제기업과 > 시군에 업무 위임으로 도에 위원회 별도 설치 불필요			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"없 음"
- 5. 토 론 요 지: "없 음"
- 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7. 소수의견요지: "없 음"
-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"없 음"
-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 -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- 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1. 지방자치단체의 구역, 조직,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

나.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·폐지 및 그 운영·관리

□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, 지방공공요금의 조정, 물가안정 시책,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, 유통·물류시책, 소비자 권익증진 시책,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기능)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 - 1.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 - 2. 지역물가안정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
 - 3. 지방공공요금의 조정에 관한 사항
 - 4. 유통산업간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
 - 5. 물류시책에 관한 사항
 - 6. 소비자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 등에 관한 주요시책
 - 7. 전자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

- 8. 소상공인 보호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
- 9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
- 제3조(위원회의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② 위원장은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.
 - ③ 당연직 위원은 소비자 권익증진, 유통, 물류, 물가, 지역경제, 소상공인과 관련된 실·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.
 - 1.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2. 언론인, 물가 관련 기관·단체의 장, 노동자단체 대표 및 시민단체 대표
 - 3. 상공회의소의 임원, 소비자단체대표,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4. 물류정책·유통단지입지정책 또는 물류표준화추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5. 정보통신 또는 전자거래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 - 6. 소상공인과 관련된 기관 관계자, 전통시장대표 및 슈퍼마켓대표
 - ④ 위원회의 위원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 - ⑤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.
- 제4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다.
 -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제5조(위원회의 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일시·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하거나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④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 할 수 있다.
- 제6조(회의록)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·비치하여야 한다.
- 제7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 - ②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. 다만,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.
 -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.
- 제8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분과위원회를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 - 1.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
 - 2. 물가대책분과위원회
 - 3.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
 - 4. 유통·물류정책분과위원회
 - 5.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
 - 6.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
 - 7. 소상공인경쟁력분과위원회
 -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-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분과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·단체의 장 등이 추천한 실무급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.

- ④ 분과위원회가 의안을 심의·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 심의·의결한 것으로 본다.
- ⑤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9조(의견 청취) ① 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 당사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의 의견청취 및 자료제출요구는 위원회(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)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- 제10조(심의안건 제출) ①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분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위원회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·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.
- 제11조(수당 등)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가 정하는 수당과 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2조(시행규칙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○ 종래에 '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'에서 통합 운영하여 온 '지역경제협의회', '소비자정책위원회', '유통분쟁조정위원회' 등 각종 경제 관련 위원회를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개별조례에서 구성 운영하기로기능을 정비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「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」 폐지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충청북도경제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따른 신규 위원회 운영
 - 지역경제협의회, 소비자정책위원회, 유통분쟁조정위원회, 소상공인위원회

3. 관련조문

- ○「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」제3조(구성)
- ○「충청북도 소비자 기본조례안」제29조(위원회의 구성 등)
- 「충청북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안」제3조(구성)
- ○「충청북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조례안」제10조(위원회의 구성)

4. 추계결과

○ 협의회 참석위원 연간 수당 산출내역

- 지역경제협의회 : 130,000원*14명*연1회 = 1,820천원 - 소비자정책위원회 : 130,000원*10명*연3회 = 3,900천원 - 유통분쟁조정위원회 : 130,000원*15명*연1회 = 1,950천원 - 소상공인위원회 : 130,000원*9명*연1회 = 1,170천원

※ 출석수당: 기본수당(2시간 이내) 100천원, 초과수당(2시간 초과) 30천원

○ 산출과정 : 연간 8,840천원, 2022년부터 향후 5년간 44,200천원 소요

○ 재원조달방안 : 도비 10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(세출)

(단위: 천원)

구 분	계	1차년도 (2022년)	2차년도 (2023년)	3차년도 (2024년)	4차년도 (2025년)	5차년도 (2026년)
참석위원 수당	44,200	8,840	8,840	8,840	8,840	8,840

6. 작성자 : 경제통상국 경제기업과장 정 선 미(220-3210)